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 제도의 이해

홍수열 소장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1. 폐기물관련 법률 현황

< 처리 관련 >

< 재활용 관련 >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폐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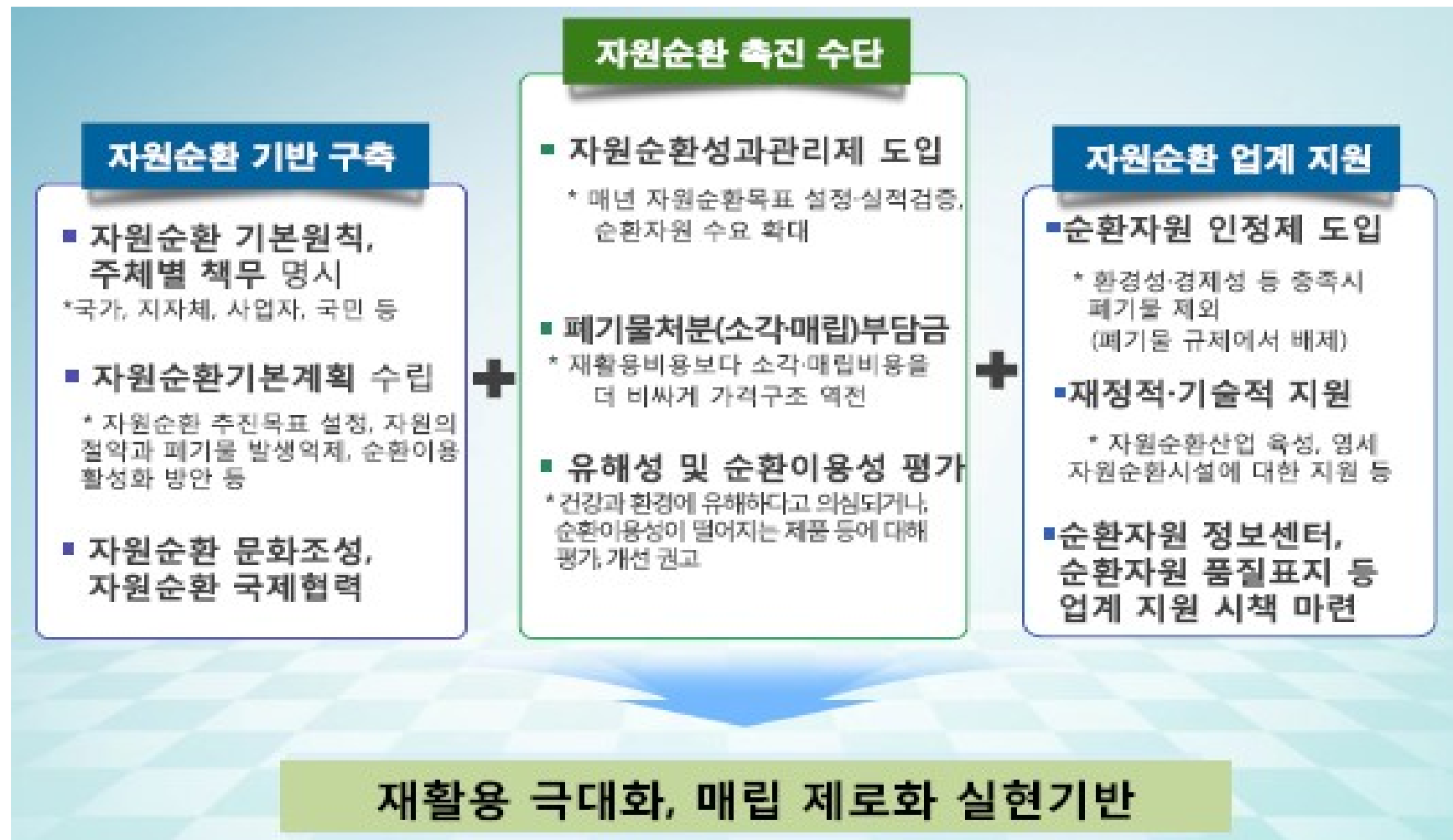
재활용촉진법

국가간이동법

전기전자법

법 른 명	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 개념 및 분류 - 처리기준, 처리시설, 처리업 허가 - 폐기물 수출입 신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포장폐기물, 1회용품 발생억제 -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재활용산업 육성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처리업 허가 -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질 구조개선 - 품목별 재활용 목표율 등
폐기물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유해폐기물 수출, 입 허가, 국내 경유 동의 - 폐기물반출명령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산단, 택지개발 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2. 자원순환기본법



문제점

- **자발적인 감량 목표(계획) 수립 체계**
 - 달성이 용이한 수준의 목표 설정
 - 감량 목표의 실질적 효과가 낮음
- **생산량대비 원단위 발생량 지표 한계**
 - 단순 관리 체계의 통계 정보 제공
 - 지속적인 감량 성과 관리 지표 역할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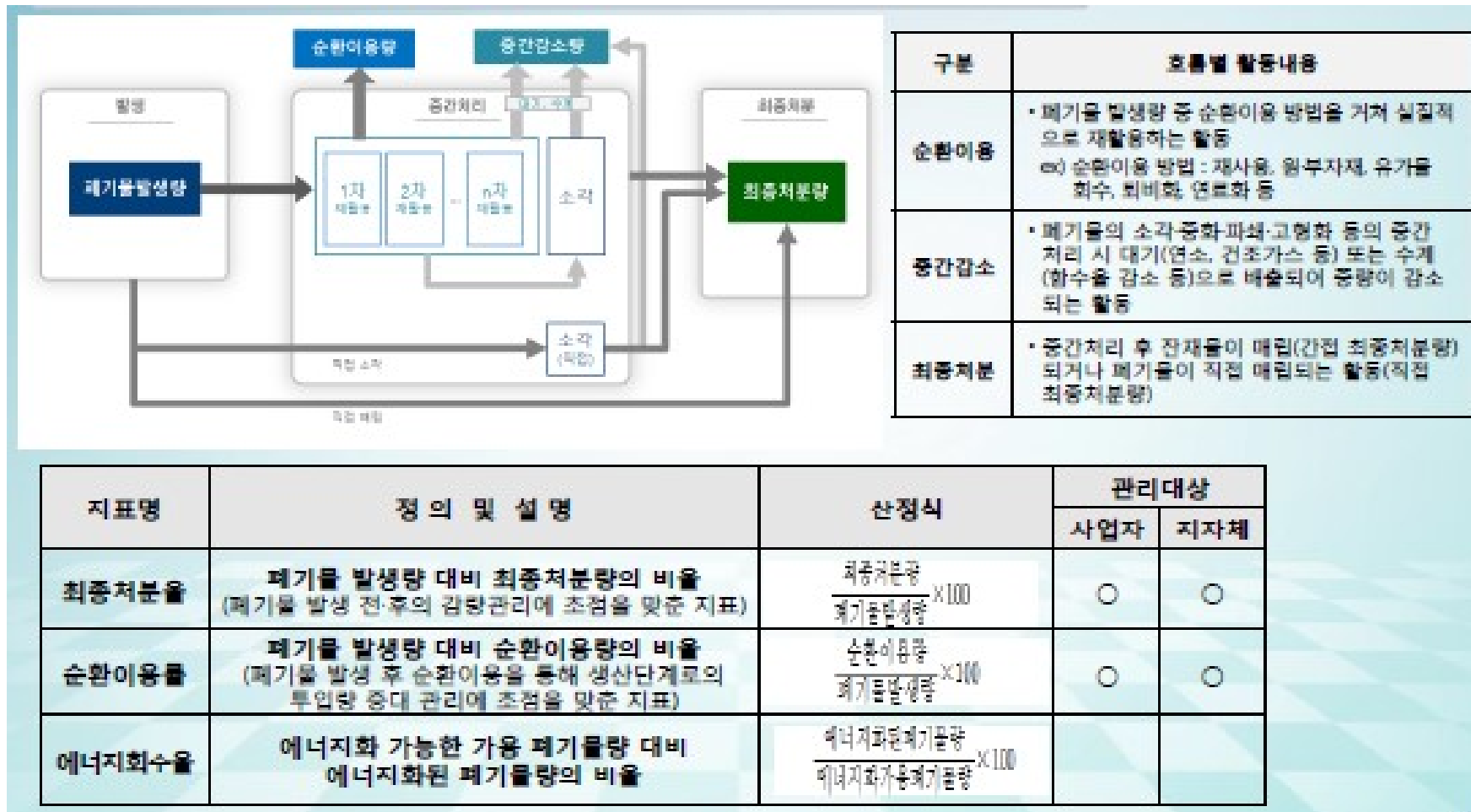
개선방향

- 감량 목표 부여를 통한 성과 관리 체계
 - 업종 및 사업장 별 개별 목표 수준 부여
 - 실질 재활용 향상을 통한 감량 실천
- 성과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설정
 - 매립제로화 달성을 위한 최종처분을
 - 실질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이용률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법 제15조~제16조)

-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 지표(순환이용율·최종처분율 등)를 목표로 할당하고, 이를 이행 하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목표부여방식의 성과관리 체계
- 자원순환성과관리 이행실적의 검증 및 평가 결과를 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반영하여 성과·통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추진



관리대상	이행목표	미이행시 조치사항		인센티브
		1차	2차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지자체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 달성 조치명령	명단 공개 등 이행강제 조치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

최종처분율

폐기물 발생량 대비 최종처분량
비율(2020년까지 3%)

순환이용률

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
비율(2020년까지 86.5%)



소각, 매립 등 처분 최소화,
순환이용 극대화로 재활용
신시장 창출

-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 최근 3개년 연평균 배출량 기준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이거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기존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대상자와 동일)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실시

대상제품

1.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마.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2.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의심되는 제품 등

평가내용

1.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의 가능성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3. 제품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4. 제품등의 내구성(耐久性)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

평가결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거나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권고

- 해당 제품 등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 권고

< 개선권고 미이행시 >

해당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
평가 결과 공개

-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법 21조)
- 단순 소각, 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선택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개념 구조]



→ 소각·매립 비용을 재활용비용
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여
폐기물 처리시장의 가격 교정
→ 폐기물처분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감안

1. 부과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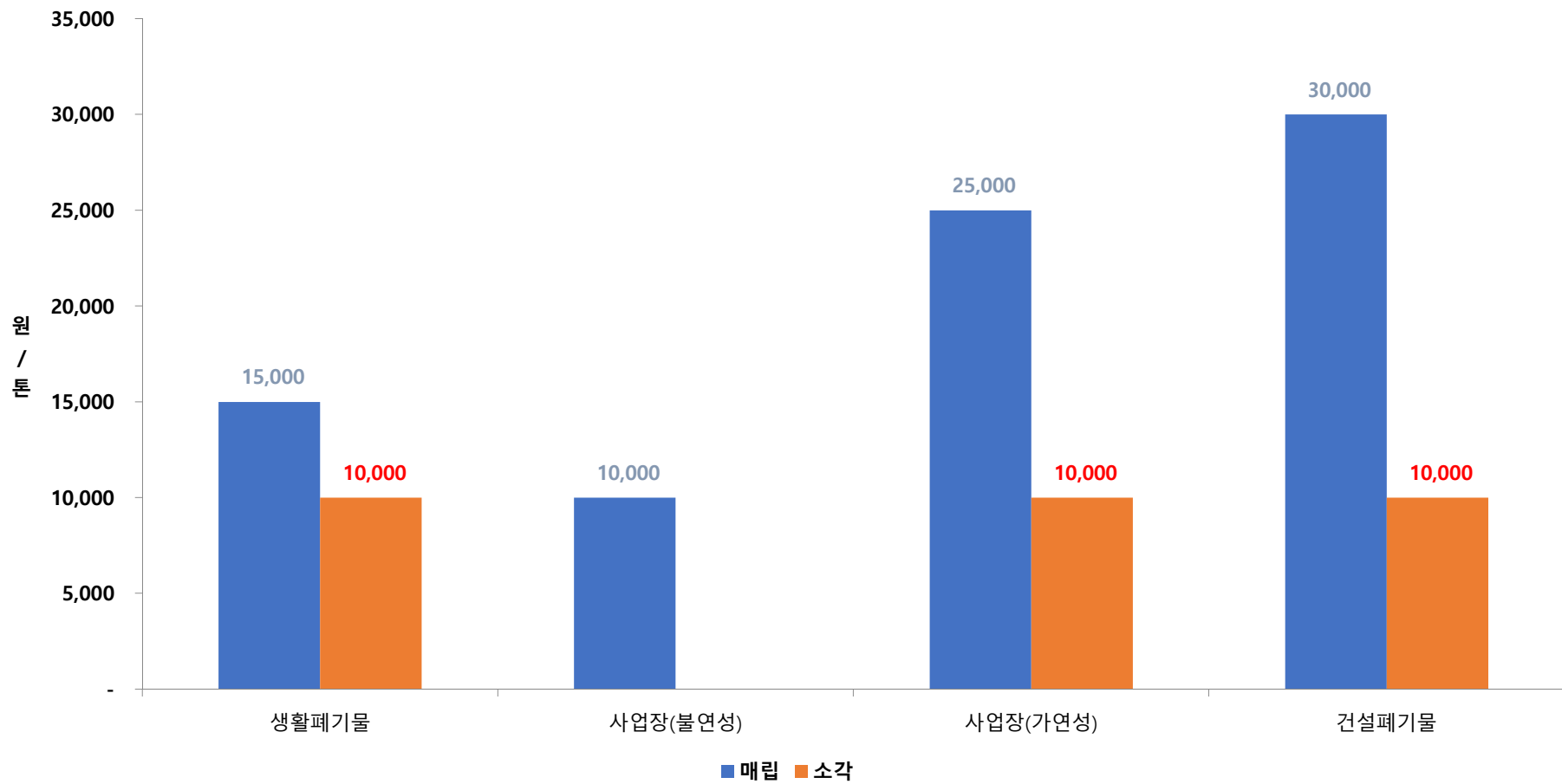
-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 부과대상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으로써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ex. 재활용 금지(제한)대상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3. 부과요율

-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ex. ① 실태조사(문헌조사)를 통한 폐기물처리비용(매립 < 소각 < 재활용) 산정
② 환경비용, 토지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사회적 처리비용산정



감면대상	감면율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50~10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50~75%
3.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100%
5.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6.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 4호의 중소기업 중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전기자동차순환법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경우 연간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에 한정됨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법 제22조)

자원순환시설 환경개선, 순환이용 시설 설치·운영, 자원순환산업·시설 단지 조성·운영, 폐지·고철 등 수집·운반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법 제23조)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가 보조금·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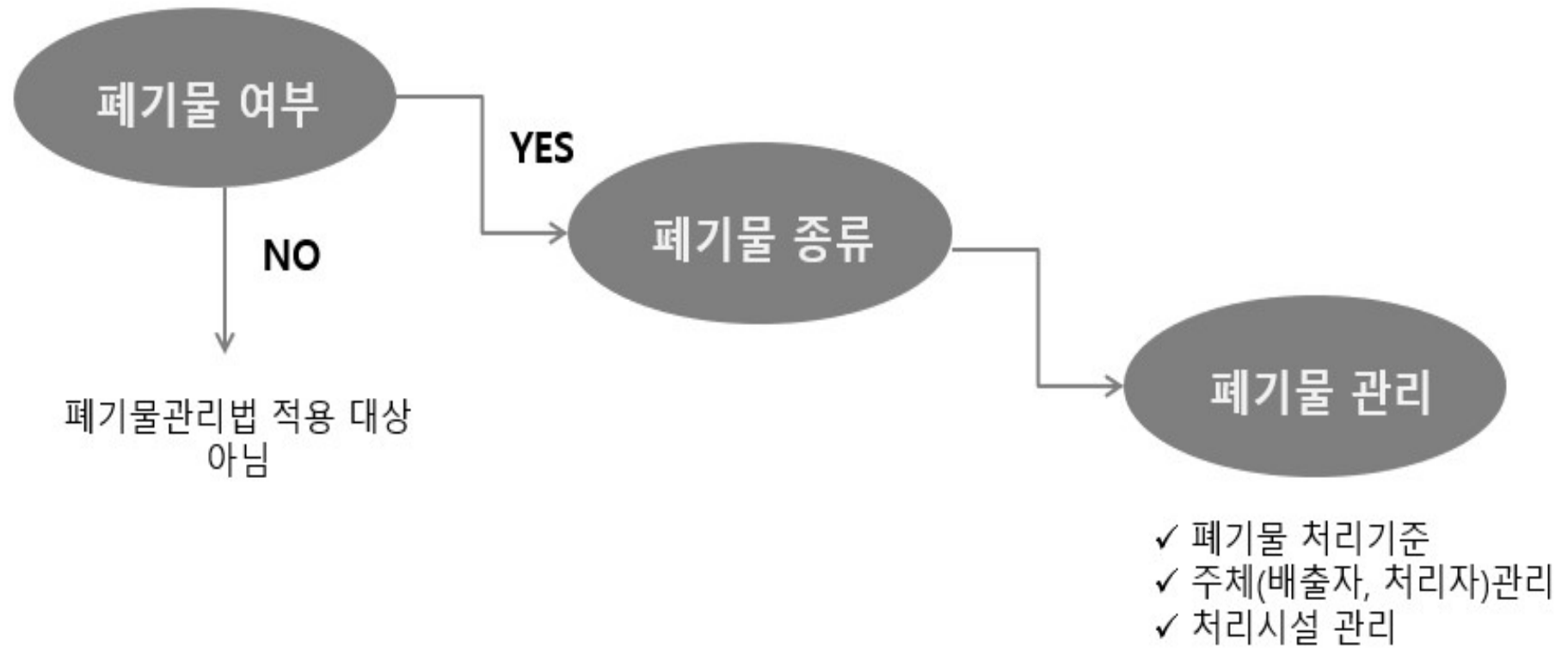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법 제24조)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판로 등 정보를 관리·제공

재정적·기술적 지원(법 제26조)

폐지·고철 등 수집·운반자 등에게 기술지원자금 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2.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관리란?

- ✓ 발생억제 및 친환경적 처리를 통하여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제1조 목적)

※ 폐기물(물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 유해성(비위생성), 자원성

- ✓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의 2)

배출단계

발생억제

배출억제

주변환경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전조치

처리단계

재활용 우선

수입억제/국내처리

친환경적 처리
(양과 유해성 감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원인자 : 환경복원책임 및 오염피해구제비용 부담

2. 폐기물의 정의

-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폐수,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2조 1호)

- (개정안)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버리거나 버려야 하는 물질 또는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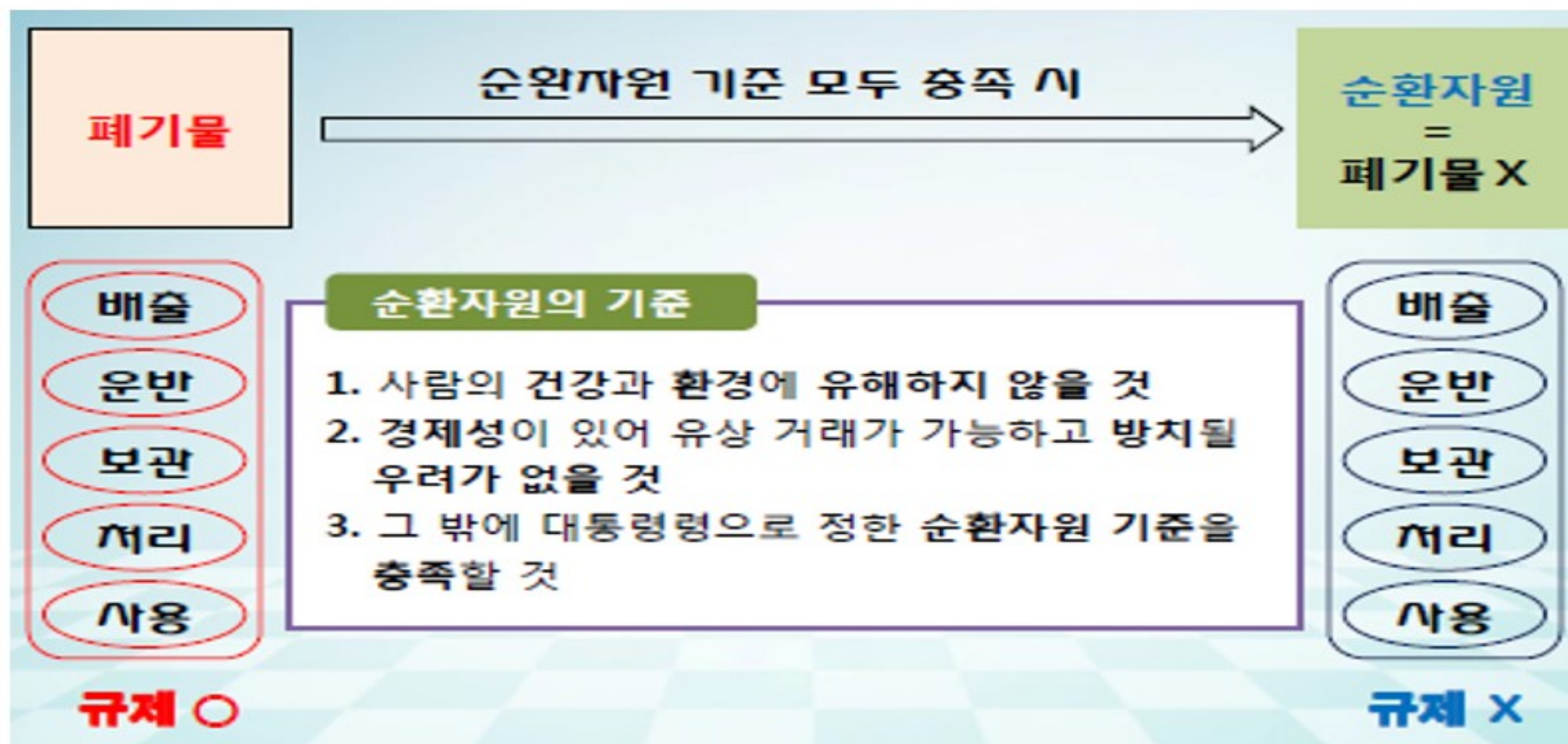
- ✓ 국내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의 정의는 주관적 의미의 불용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자원순환기본법의 순환자원 인정제

2. 폐기물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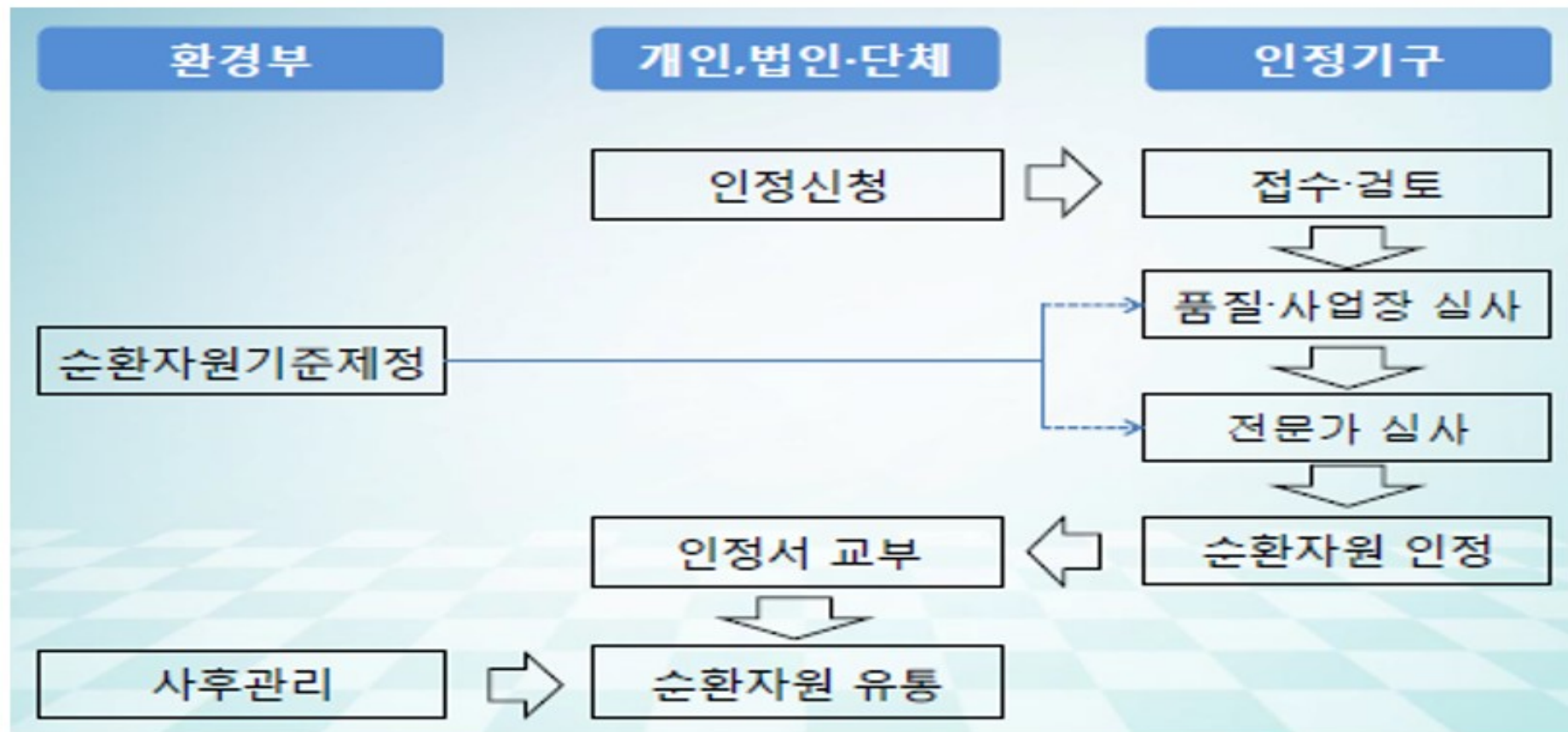
✓ 아래의 물질은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2. 폐기물의 정의(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인정제)



2. 폐기물의 정의(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인정제)



2. 폐기물의 정의(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인정제)

최 초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2회 이후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

▣ 순환자원 인정절차 간소화

폐 지

폐금속 등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



구비서류 간소화,
품질심사, 사업장(공장)
심사 등 절차 일부 생략

2. 폐기물의 정의(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인정제)

순환자원 사용촉진

순환이용사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순환자원을 일정량 이상 사용, 환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은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우대조치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환자원에 품질표지 인증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우선 구매 요청 또는 권유 실시

순환자원 인정취소

취소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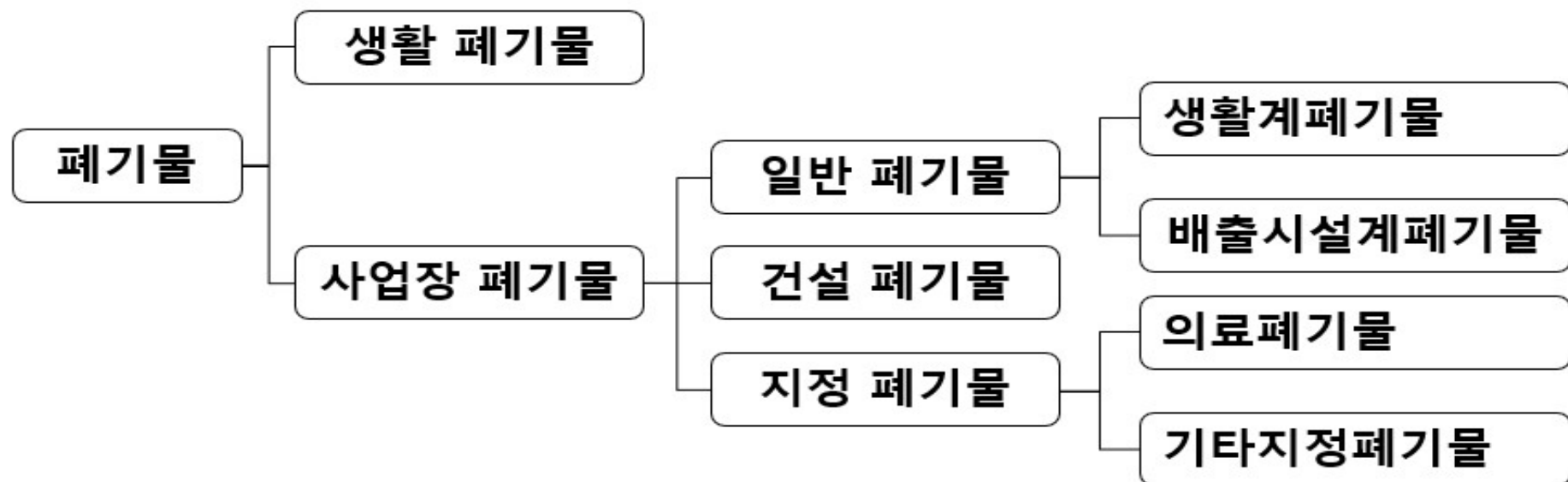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이 순환자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정취소

폐기물로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조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보고(환경부장관)

3. 폐기물의 종류



- ✓ 배출원 중심의 폐기물 분류체계 (폐기물 처리의 책임주체 구분의 의미)
- ✓ 폐기물 처리방법의 관점에서 폐기물 분류(가연성/불연성, 유기성/무기성, 액상/고상)

3. 폐기물의 종류

1.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3. 폐기물의 종류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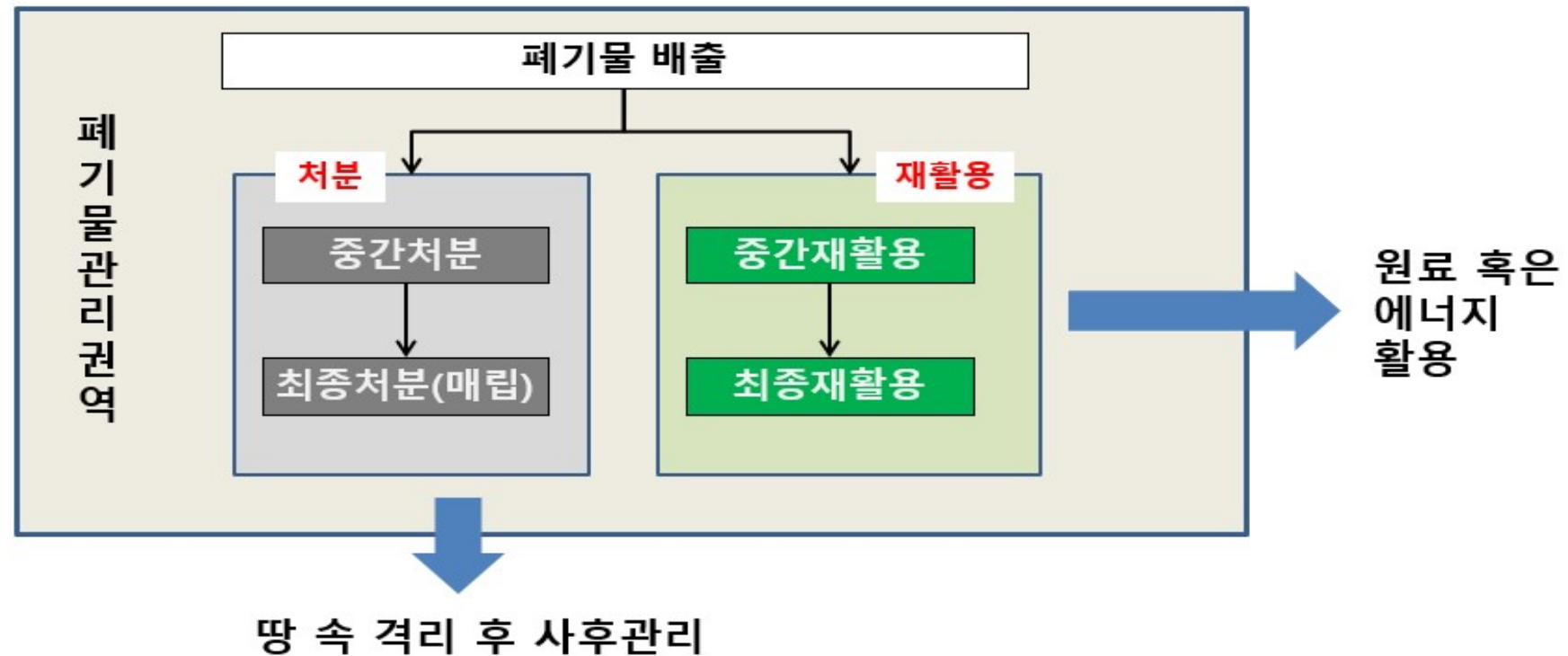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폐기물의 처리

✓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2조 5의2호)



4.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 처리기준 (제13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제13조의2), 시행규칙 별표 5의2

재활용의 개념

- 재사용 및 재생이용
- 재사용 및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
- 에너지 회수
-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
-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

(제3조 제7호)

구체화

재활용 용도 및 방법

- 재활용원칙에 부합할 경우 지정된 용도 및 방법, 기타 환경성 검토를 통해 재활용 가능

(제13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종류), 별표4의2(재
활용유형), 별표4의3(폐기물종류
별 재활용가능유형), 5의3(폐기물
의 재활용기준)

4.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위해성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 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유해물질 유출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소음, 진동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유해특성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 폭발성 2. 인화성 3. 자연발화성 4. 금속성 5. 산화성 6. 용출독성, 7. 감염성 8. 부식성 9. 생태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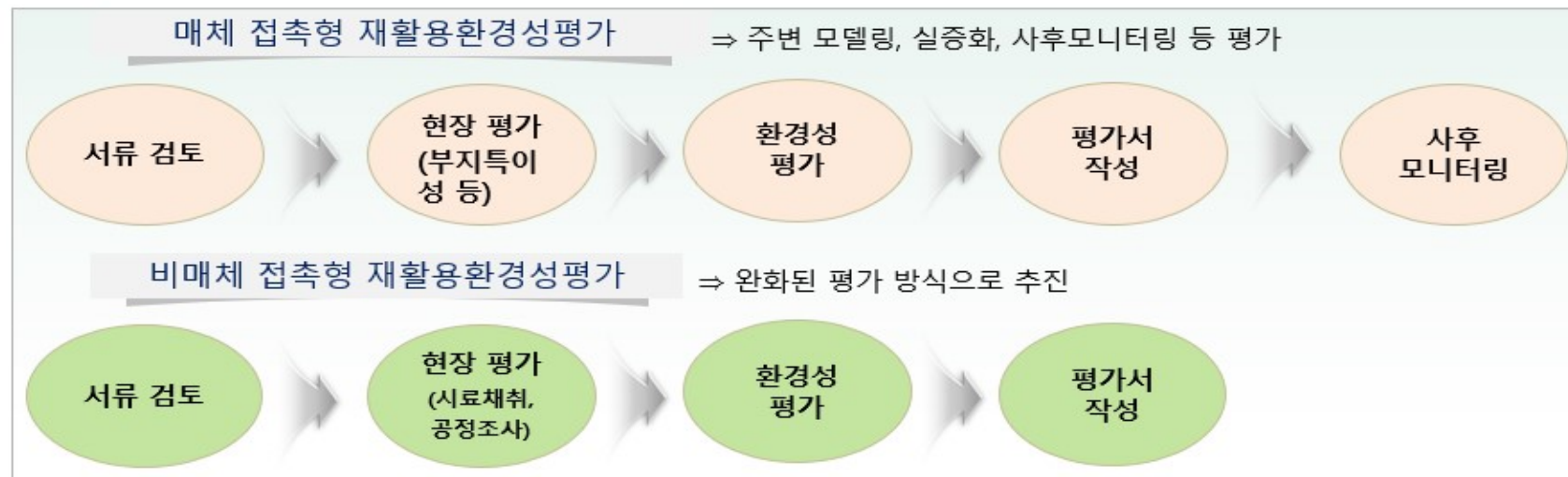
4.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금지 및 제한)

1. 폐석면 2. PCBs 3. 의료폐기물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 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 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2.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3.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5.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4.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환경성 평가)

- (평가절차)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기관에 재활용계획서, 재활용 용도·방법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 평가전문기관이 환경·인체 유해성 여부 예측·평가
- (승인절차)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평가서와 함께 승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 신청 ⇒ 환경성검토(승인위원회) 후 승인여부 결정



4. 폐기물의 처리 (재활용환경성 평가)

- (평가규모) 매체접촉재활용으로 120,000톤(토양과의 혼합상태 포함)이상, 면적 30,000m² 이상

⇒ 재활용환경성평가대상으로 설정

*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으로 신청되는 유형의 경우 평가 규모에 관계없이 평가 후 재활용 가능여부 결정,
다만 신규 재활용방식이 매체접촉형임에도 불구하고 평가규모 이하일 경우 간소화된 평가방식 적용가능

	규모 미만	규모 이상
기존 비 매체 재활용방법	평가없이 재활용가능	평가없이 재활용가능
기존 매체형 재활용방법	평가없이 재활용가능	환경성평가, 승인검토후 재활용 가능
신규 재활용방법	환경성평가, 승인검토후 재활용 가능 * 간략 평가 가능	환경성평가, 승인검토후 재활용 가능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차량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적재함과 동일한 재질의 금속 덮개를 설치한 차량



터널형



천개형



슬라이드형



셔터형

밀폐형 덮개설치차량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덮어 밀폐한 차량

포장덮개 설치차량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분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 흘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음식물류폐기물	(원칙) 탱크로리 (예외)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
사업장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고상), 탱크로리(액상)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 폐지·고철 등 침출수, 부패, 흘날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 흘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고상)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밀폐된 용기,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 (예외3, 액상)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
지정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고상), 탱크로리(액상) (예외)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기준 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2014.12.31))

종전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밀폐형 차량으로 인정

증차, 교체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 불인정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기준 변경(2016.12)



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포장덮개 설치 차량 기준

○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밀폐된 상태로 포장한 경우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포장덮개를 덮고 고정

※ 밀폐된 상태로 포장한 경우란 1차 포장 용기가 밀폐되어 있고(예: 용기 뚜껑 장착, 톤백마대 윗부분 밀폐 등), 용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졌을 때 내부의 폐기물이 낙하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수준을 말함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배출 신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

- 1)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 3) 건설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
 - 4)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
- ※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은 배출신고 대상

■ 신고일

- 1) ~ 2) 해당자는 사업개시일 혹은 폐기물 배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 해당자는 폐기물 배출예정일까지
- 4) 해당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신고

- 1) 월평균 배출량 50% 이상 증가 (건설공사 또는 작업폐기물은 총배출량 50% 이상 증가)
- 2) 신고당시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의 발생(1) 100kg 이상 배출, 2) 300kg 이상 배출)
-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화
- 4)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 5) 공동처리기구 관련 대표자 등 변경
- 6)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
- 배출자와 수탁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
- 기존 업체는 시행 후 6개월 (2018년 10월 19일까지 완료)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

➤ (제2조) 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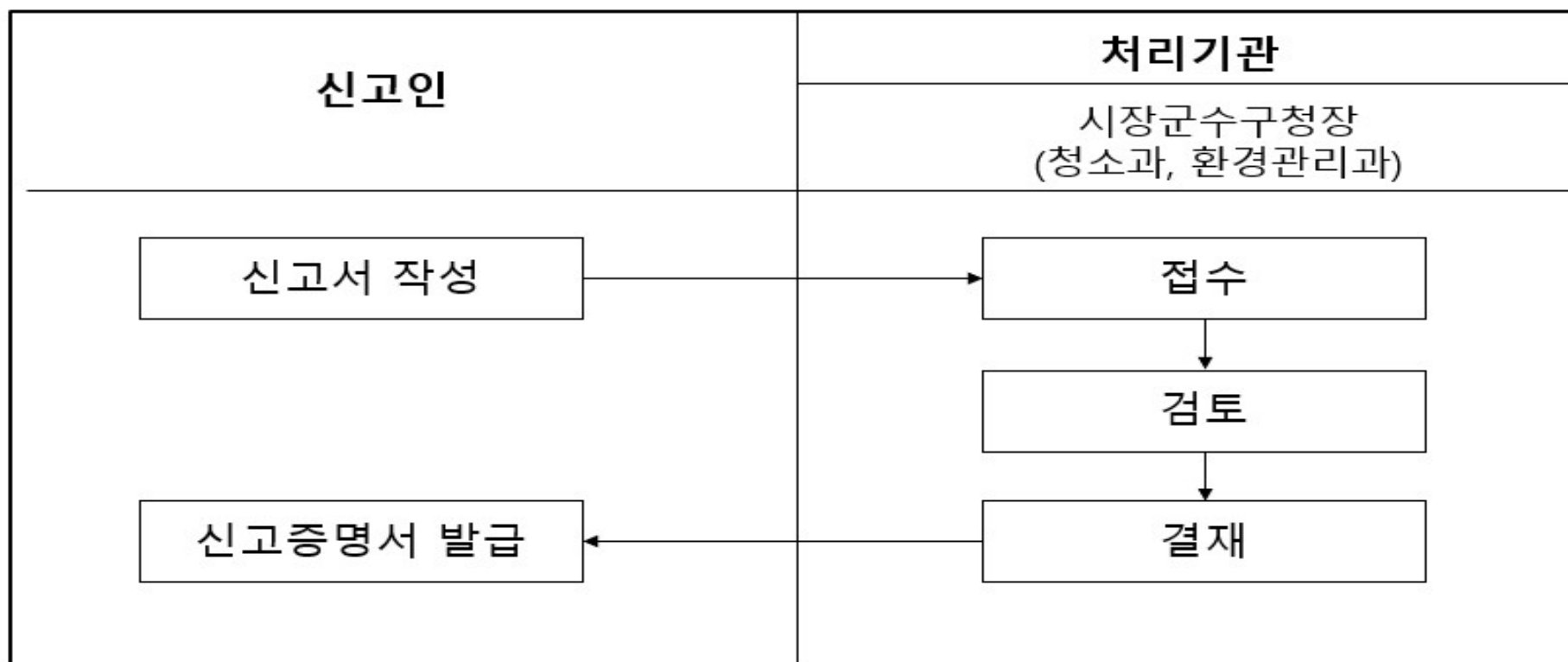
- 폐산류(가) : 폐산(pH 2.0이하), 폐석고(폐인산석고, 폐황산석고), 무기성 공정오니(유리식 각 잔재물 포함)
- 폐알칼리류(나) : 폐알칼리(pH 12.5이상), 폐석회, 무기성 공정오니(보오크사이트 포함)
- 금속성 분진, 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 포함)

➤ (제3조) 부식 또는 반응성 폐기물

- (준수)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
-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폐유독물질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처리기간 : 7일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배출 신고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수탁처리자의 확인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유해물질함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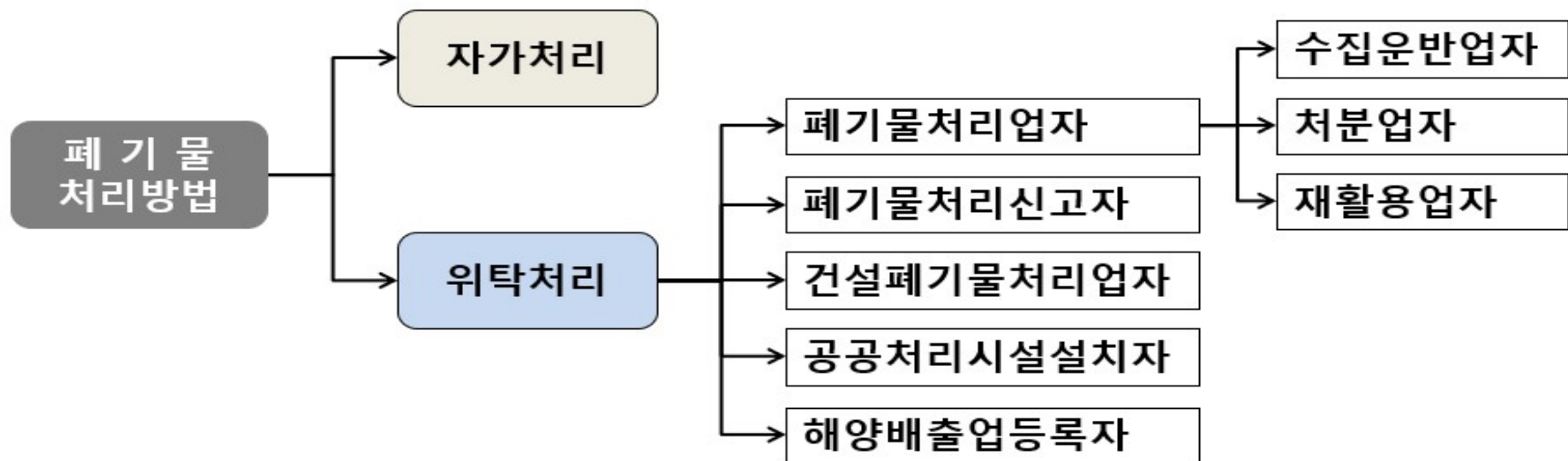
■ 대상사업자

- 1) 오니를 월평균 500kg 이상 배출
-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폐유를 각각 월평균 5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4) 폐석면을 월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5) PCB 함유 폐기물
- 6)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3호에 따른 유독물)
- 7)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처리계획 변경

- 1) 발생량 월평균(지난 1년간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 30% 이상 증가, 2)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위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3)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 ✓ 사업장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시 각 단계별로 올라로시스템 입력. 다만 의료폐기물은 RFID 이용 입력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지정폐기물 처리확인 대상)

➡ 폐기물의 처리과정 추적 및 파악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 ~ 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위탁

- ✓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 (제17조 제1항 3호)
-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처리업허가증 혹은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 사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류 사본 포함)를 받아야 함.
- ✓ 작업 혹은 건설폐기물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 일반폐기물(오니 월평균 2톤 이상, 광재/분진/폐사/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월평균 1톤이상)
- ✓ 지정폐기물(오니 월평균 1톤 이상, 폐농약 등 월평균 각 130gk 또는 합계 200kg,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각 월평균 200kg 또는 합계 400kg, PCB, 폐유독물,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기타사항

폐기물의 보관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간 90일 (3톤 이상인 경우)/ 중간 가공폐기물의 경우 120일
-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기간 45일 ~60일 (3톤 이상인 경우)/ 3톤 미만인 경우 보관기간 1년

장부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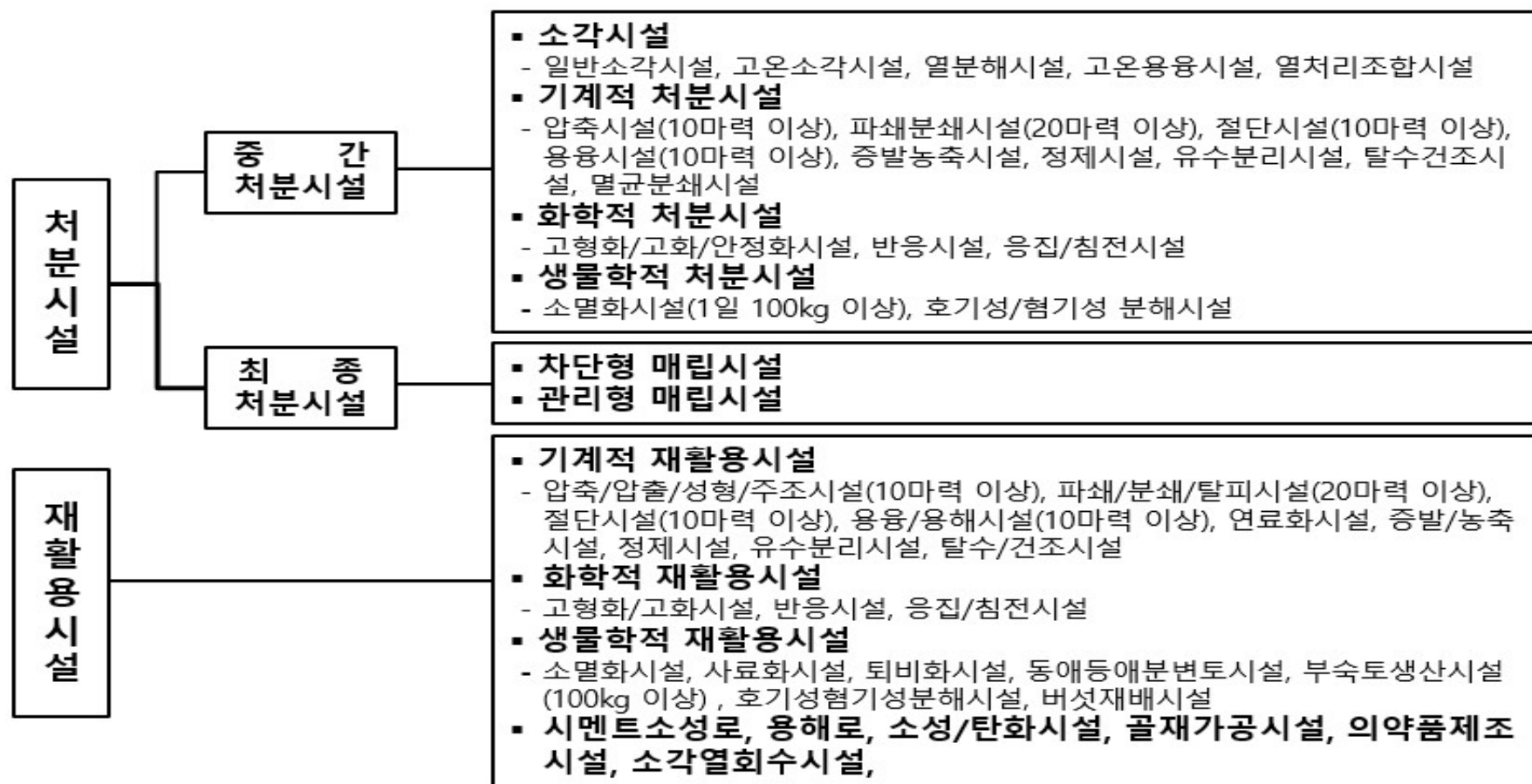
- 폐기물발생량, 재활용상황, 처리실적 등을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올바로 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으로 대체) (제36조)

보고서 제출

-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38조)

※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자에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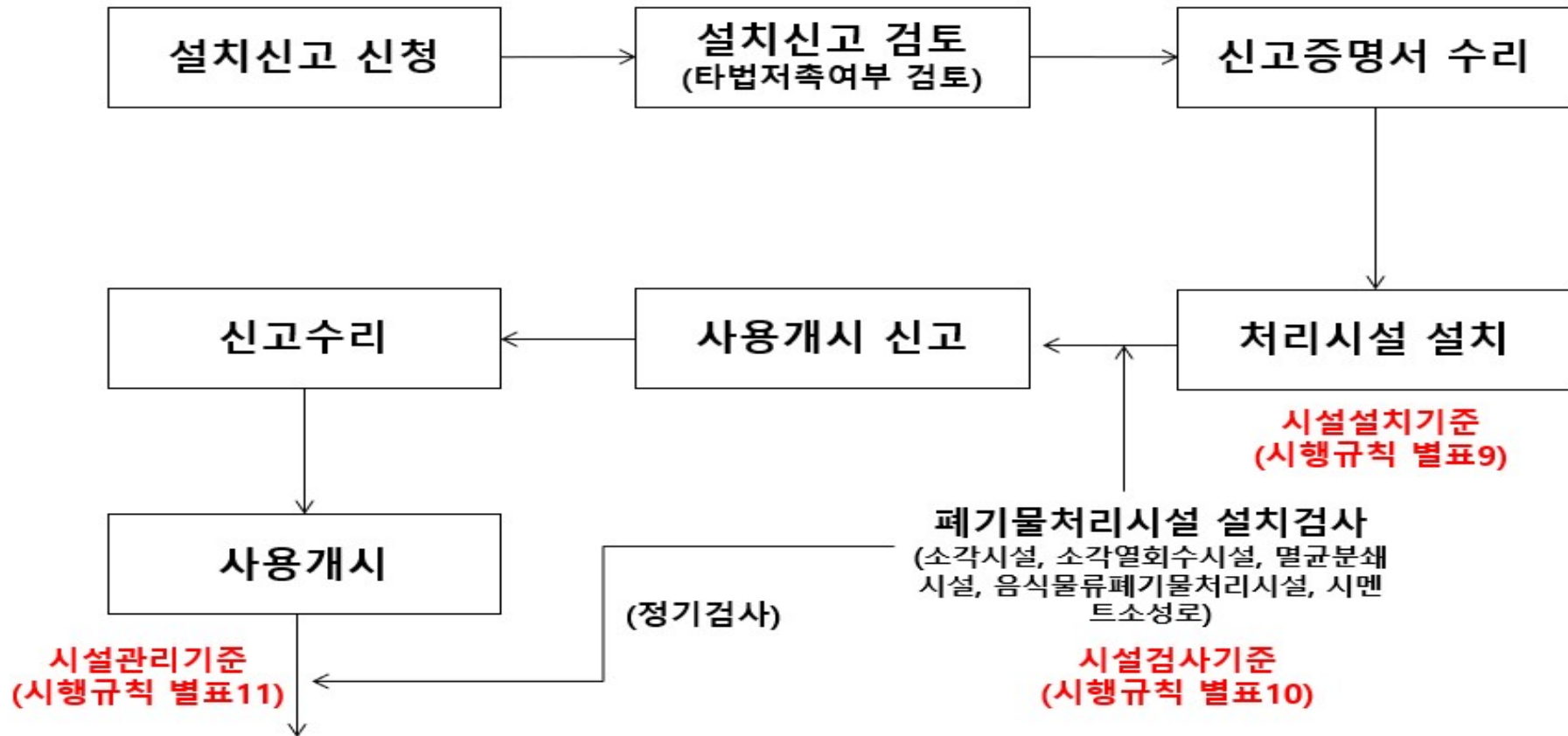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처리시설의 종류 시행령 별표3)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설치신고		설치승인
100톤 미만/일	일반소각시설	100톤 이상/일
10톤 미만/일	지정소각시설	10톤 이상/일
100kg 미만/시간	고온소각시설	100kg 이상/시간
125kg 미만/시간	증발/농축/정제, 유수분리시설	125kg 이상/시간
100톤 미만/일	압축/압출/성형/ 주조/파쇄/분쇄/ 탈피/절단/용융/ 용행/연료화시설, 탄화시설	100톤 이상/일
	탈수/건조시설, 열균분쇄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100톤 미만/일	생물학적 처리 시설	100톤 이상/일
100톤 미만/일	소각열회수시설	100톤 이상/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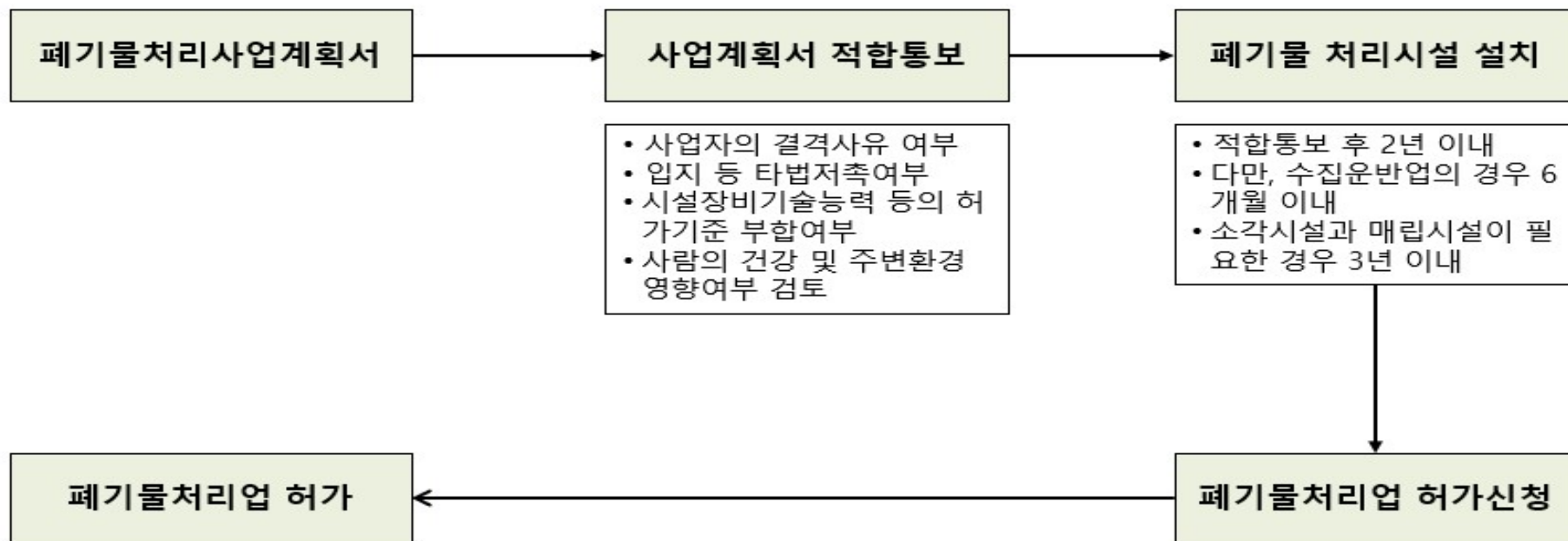
7.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 자원절약법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 ✓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신청 가능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 및 보관기간>

- 재활용업자, 중간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가 보관하는 경우(의료폐기물 제외)
 - 1) 1일 처리용량의 30일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 (매립시설의 일정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 1)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 1)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 2) 그 밖의 경우 :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7일 이내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기술능력(시행규칙 별표7)>

● 재활용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일반폐기물)

-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함.
- 2) 다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시설 또는 용융시설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 또는 부숙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8)>

- 1) 전용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금지/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물건은 허용
- 2)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와 배출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안됨.
- 5)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안됨.
- 6) 허가취소, 영업정지,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7) 휴업, 폐업, 처리능력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면 안됨.
- 8) 별표7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함.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폐기물재활용업자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8)>

- 1)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등 예외사항)
- 2)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지 말 것
- 3)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4)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 발열량 등을 매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5)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의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의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성상을 분석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
- 6)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분석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
- 7)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분석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
- 8)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폐오일필터 재활용업자는 정제연료유 등에 대한 공급계획서를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공급
- 9)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류 정제연료유 생산 재활용사업자는 공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후 적합통보를 받은 후 공급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폐기물재활용업자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8)>

- 10)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한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보관
- 11)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로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 등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12) 폐기물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생략)
- 13)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생략)
-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재활용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금지

8. 폐기물 처리업 (제25조)

허가의 취소

- ✓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등

영업정지(6개월 이내)

-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혹은 소각
-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 허가증 대여 등 20가지 사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1. 해당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
2. 해당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2천만원), 3개월(5천만원), 6개월(1억원) / 시행령 별표6

9. 폐기물 처리신고자(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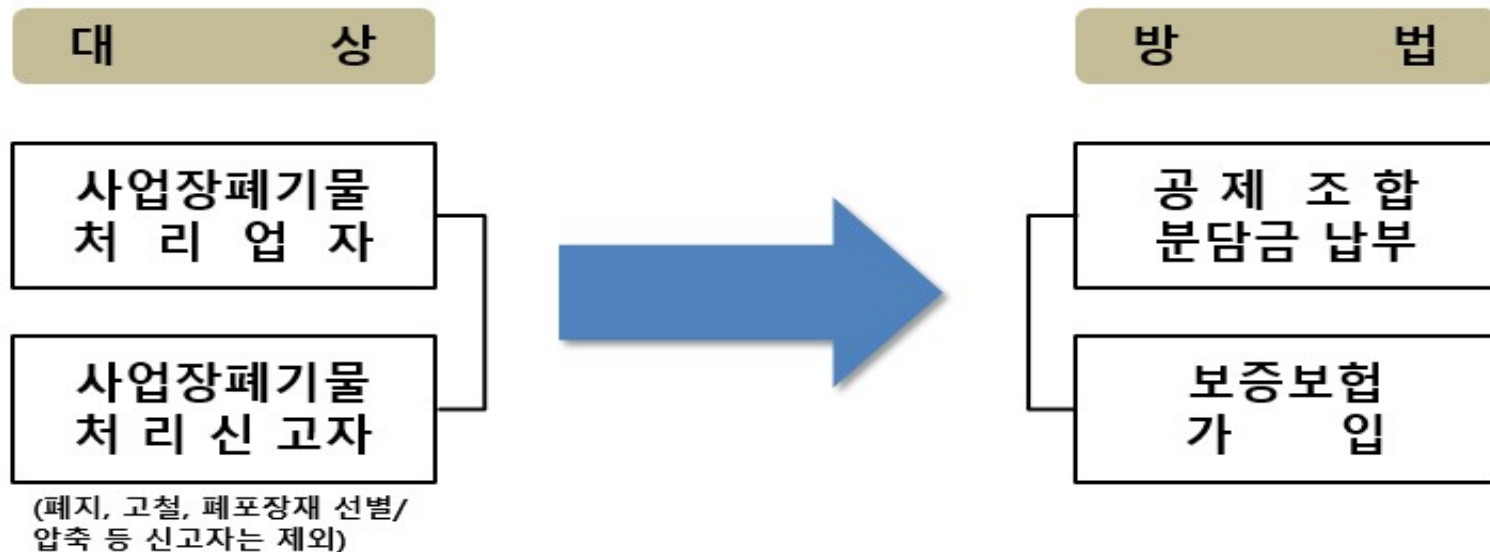
- ✓ 동식물성 등의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 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자
- ✓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축전기 및 폐변압기, 폐드럼,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 수리수선 및 원형재사용 등 단순가공으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16)

9. 폐기물 처리신고자(제46조)

<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 (시행규칙 별표17의2)>

-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
- 2) 위탁재활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3년간 보관.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해서는 안됨.
- 4) 자신의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안됨.
-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됨
-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거부 금지
- 7)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로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 대여금지
- 8)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금지
- 9) 폐지, 고철, 폐포장재 선별/압축 하는 자의 경우 보관장소에 차폐가 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등
- 10)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않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

10.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40조 ~ 44조)



- ✓ 목적 :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전문하는 사업자의 폐기물 방치 방지
- ✓ 시기 :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시작을 하기 전까지 처리 이행 보증을 완료

<지도점검 내용>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1.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 항	◦ 배출자신고 여부(배출자신고서 확인) ◦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제조공정도, 사용원료, 폐기물분석결과서 등으로 확인 ◦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관리대장 작성 요령대로 기재여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여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일치 여부
2. 폐기물처리 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여부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시설에 한함) ◦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자는 제때 입력 여부,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

<지도점검 내용>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지정폐기물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발급받는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 수집, 운반비, 처리비 구분 기재 여부 등)
4.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배출자 지도점검 내용>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5. 매립시설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관리여부 ◦ 설치승인 및 사용개시 신고 등 이행여부
6.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 태	◦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옥외보관 승인여부 등 시행규칙 별표₅ 적합여부) ◦ 처리방법 등이 다른 폐기물 등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비산·유출·지하침투·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초과 보관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침출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외부 유출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배출자 지도점검 내용>

구 분	주 요 점 검 사 항
7.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증 발급 또는 적정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8. 각종 보고 사항 및 행정 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 여부 (폐기물관리대장 등 확인)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실시여부

<주요 위반사례>



- ◆ 혼합보관, 적정보관시설 미사용 등
 - (혼합) 과태료 500만원
 - (부적정 보관시설) 과태료 300만원



- ◆ 혼합보관(지정 + 지정외)
 - 과태료 500만원

<주요 위반사례>



- ◆ 적정보관시설 미사용
 - 과태료 300만원(1차 위반)



- ◆ 폐유 보관기간(45일) 초과(60일 보관)
 - 과태료 200만원(1차 위반)

<주요 위반사례>



◆ 지정폐기물 등이 우수로를 통하여 사업장 외부 유출되어 주변환경 오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위반사례>



◆ 폐기물 부적정 처리(보관)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

➤ 폐유 외부 유출

➤ 보관시설 부식으로 절삭유 외부 유출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관련

- 사출성적**

 - 기초정보관리
 - 잔량(계)서 관리
 - 대금관리
 - 원소보관장 등록
 - 시공중개구물문리대장
 - 실적보고 관리
 - 실적제외/실적 보고 관리
 - 부가자료서 관리

날짜	2008/04/01	2008/04/11	회계종류	기타회계종류
운번자			처리자	
☐ 조회 ☐ 대금정산 ☐ 액출 ☒ 실적				

일개 ▶ 처리 내역

일자	회계종류명	성상	구분	위약치량(랑)	위약치량(잔액누계)	보전량
2008/04/01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2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3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4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5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6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7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8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09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10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2008/04/11	기타회계종류	액상		0.000 kg	0.000 kg	0.000 kg

- 69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청과·축산·수산 부류 받침접시란?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두류 등 청과부류, 조수육류 및 난류 등 축산부류, 생선어류·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 등 수산부류를 단순히 소분을 목적으로 1회용 용도로 사용하는 받침접시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과대포장 규제>

제 품 의 종 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 료	10% 이하	2차 이내
		주 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 화 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 구 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 약 외 품 류	2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의 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 (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3.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 3의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4.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6.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8.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 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 품 의 종 류		기 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종합제품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향수는 제외한다)	2차 이내

- 가.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장횟수를 3차로 할 수 있다.
- 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하여 구성하고, 보호·고정 또는 상품가치 보존을 하기 위하여 완충재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 다. 내용물의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 틴 케이스는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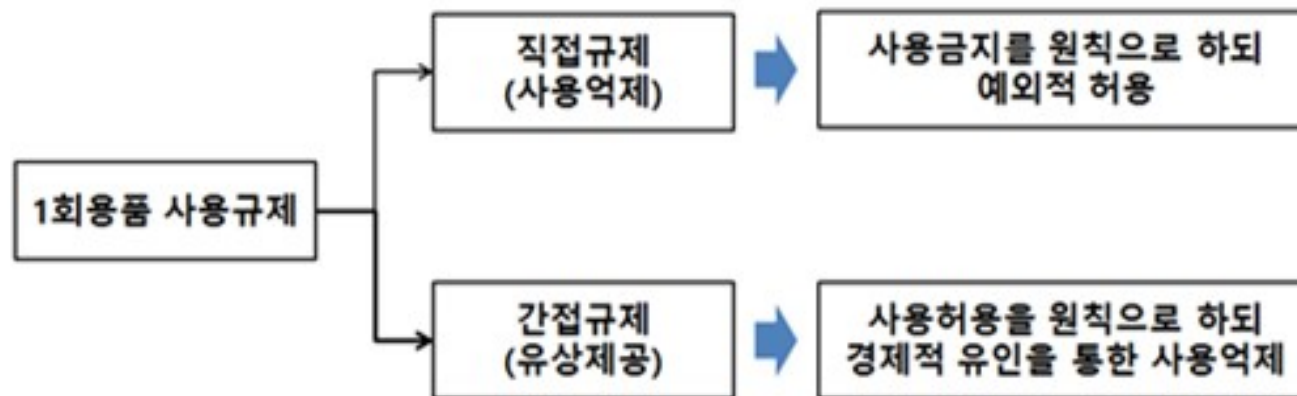
재활용 용이 (1등급)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2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재질·구조)	(3등급) (현재 기술 및 시장 여건상 개선 가능하고, 재활용 시 문제를 야기하는 재질·구조)

※ '2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불가피하게 사용되므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 '3등급'은 재활용이 어렵지만 대체할 수 있는 재질·구조가 있는 바, 재활용이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권고

3. 1회용품 사용 억제

- 식품접객업 등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1회용품 사용 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3. 1회용품 사용 억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3. 1회용품 사용 억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 5)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6)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폐기물부담금 제도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폐기물 부담금)을 매년 부과·징수
- 생분해성수지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4. 폐기물부담금 제도

품목 구분	종류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기준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나. 유리병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다. 금속캔 1) 500ml 이하 2) 500ml 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개당 56.2원 개당 84.3원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부동액	부동액	ℓ당 189.8원
3.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4. 1회용 기저귀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5. 담배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 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6. 플라스틱제품	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한다) 나.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5. 빈용기보증금제도

- 제품의 판매금액 외에 별도의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소비자에 환불해 주고,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는 판매경로를 통해 역회수하여 최종 세척 후 재사용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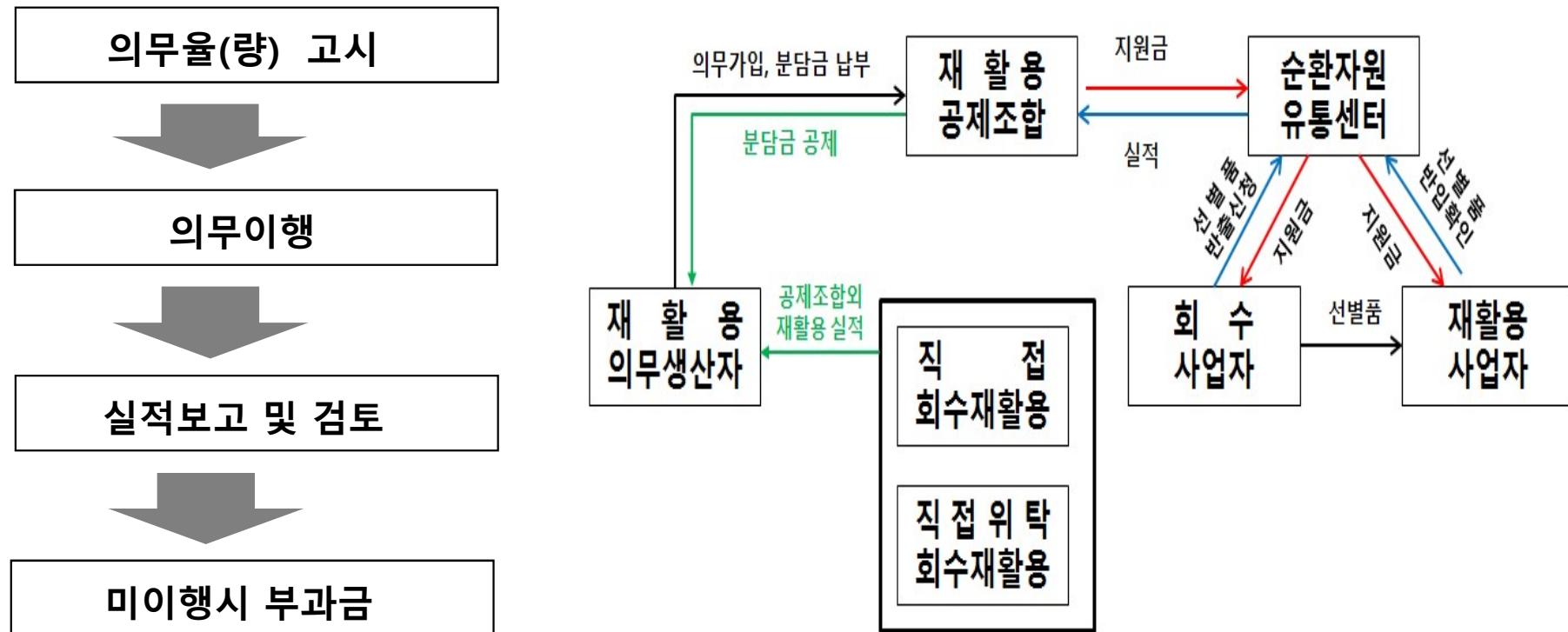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2016.6.15.부터 적용)		
	인상 전 (~2016.12.31)	인상 후 (2017.1.1~)	도매	소매	합계
190ml 미만	28원	70원	18원	10원	28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	10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	130원	20원	11원	31원
1,000ml 이상	100~300원	350원			

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제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7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6.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제도)



7. 재활용 센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8. 폐기물 다량배출자 분리배출 및 재활용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

-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폐기물 다량배출자 분리배출 및 재활용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환경성 보장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여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대상 제품>

구분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휴대폰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및 디브이디 플레이어

1. 환경성 보장제

<사전예방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준수공표>

구 분	종 류	함유기준
전기·전자제품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 ⁶⁺),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자동차	납(Pb), 수은(Hg), 육가크롬(Cr ⁶⁺)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Cd)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 공표기한 : 제조업자-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입업자-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1. 환경성 보장제

<사전예방 : 재질구조 개선지침>

구분		개선사항
재질	제조업자	- 플라스틱 재질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 단순화 -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확대 -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기호 표시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구조	제조업자	-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 제품중량의 감량화 등을 위한 구조로 개선 -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개선사항
	수입업자	-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업자별로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수입

1. 환경성 보장제

<사후관리 : 생산 및 판매자 회수·인계·재활용>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 제1항	재활용의무 이행 연도
2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 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제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규칙 제4조	
6월 30일	총 출고량, 인구수 고시	환경부	영 제15조의2제5항	
1월 ~ 12월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5조 규칙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 제2항 영 제18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법 제18조 영 제19조 및 제19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18조 영 제19조의2 규칙 제9조	

* 재활용원료 사용실적 및 재활용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지만 제출

12월까지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 제1항 영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	회수의무 이행 전년도
1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제출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6조 규칙 제6조 제2항	회수의무 이행 연도
2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 →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규칙 제7조 제1항	
4월 15일	제품별 의무이행 전년도 매입·판매실적 제출	판매업자 → 공단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2항 규칙 제5조의3	
6월 30일	총 매입량, 인구수,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 고시	환경부	법 제16조의4제2항 영 제15조의5제1항 규칙 제5조의3	
1월 ~ 12월	회수의무이행	판매업자, 공제조합	법 제16조의4제1항, 제3항, 제5항	회수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부과금 감경신청	판매업자, 공제조합 → 공단	법 제17조 제2항 영 제18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7월 31일	회수부과금 고지	회수의무량 미달성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8월 31일	회수부과금 납부 (분납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법 제18조의2제1항 영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칙 제9조	

* 회수부과금 감경신청은 해당 사업지만 제출

2.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



01

새제품을 구입할 때
배출하는 경우

- 방법 : 사용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판매대리점 배송요원에게 요청(무상)
- 대상 : 생산자 · 판매자 판매대리점

02

방문수거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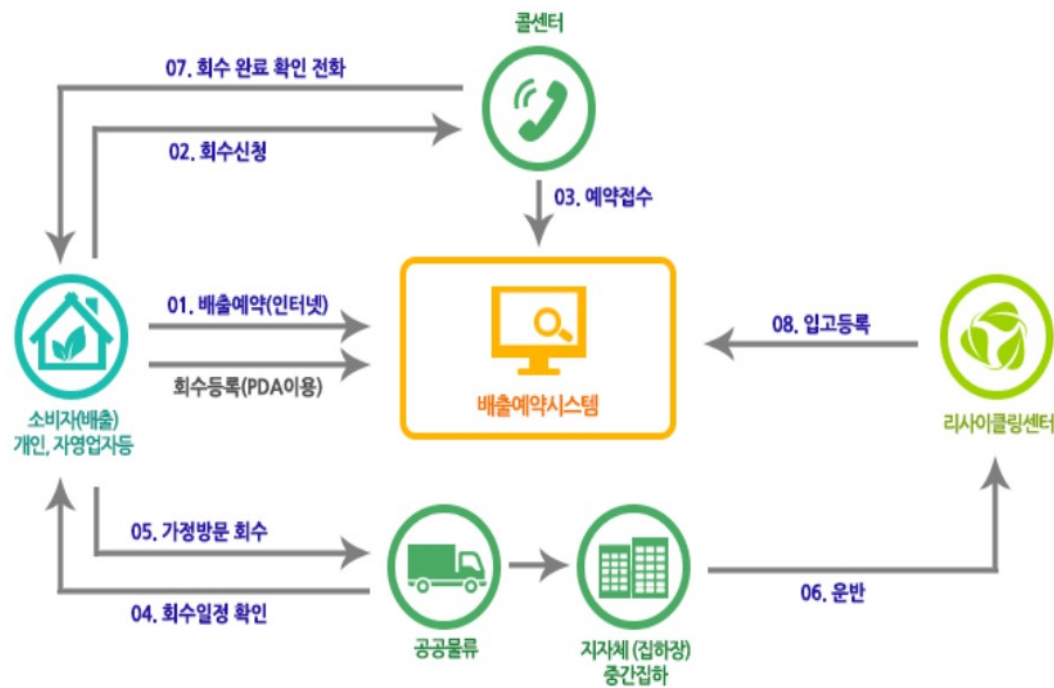
- 방법 : 폐전자제품 배출시 인터넷, 모바일(www.15990903.or.kr) 또는 콜센터(1599-0903)등을 통해 배출 등록 후 회망하는 날짜에 배출(무상)
- 대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 이상의 대형 제품, 소형가전 5개이상 등 동시 배출시

03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

- 방법 : 새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폐전자제품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등에 수거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배출(유상)
- 대상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



분 류	품 명	비 고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 / 업소용 / 냉동고 / 김치냉장고 /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 실외기 / 일체형 등
	TV	CRT / LCD / LED / 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렌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PC(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본체, 모니터(CRT, LE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을 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콜센터 운영안내



1599-0903

평일(월~금) 08:00~18:00
휴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설/추석 연휴, 신정(1.1), 공휴일

감사합니다.